

1. 개정이유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72호, 법률 제20945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예외대상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사유를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이거나, 신규 어장정화·정비업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2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어장정화·정비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 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 우 2. 별표 2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 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어장정화·정비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623